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2017년 상반기 개관예정인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와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의 위치, 명칭, 운영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(안 제2조, 제2조의2, 제2조의3)
- 나.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무의 관리 및 집행 주체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장에서 구미시장으로 변경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문화예술회관(이하 “예술회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예술회관”이란”을 ““구미시문화예술회관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“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”이란 공연시설, 체육시설, 교육시설, 기타시설 등을 말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명칭과 위치) 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구미시 송정대로 89(송정동)에 둔다.

②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(구평동)에 둔다.

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

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전단 중 “예술회관”을 “구미시문화예술회관(이하 “예술회관”이라 한다)”로, “관장”을 “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관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의하여 이를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공안질서”를 “공공질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“관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 중 “관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관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관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설비 설치를 승인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및 설비 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예술의 향상 및 전통문화의 전승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<u>구미시문화예술회관</u> (이하 " <u>예술회관</u> 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<u>예술회관</u> 사용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 <u>예술회관</u> "이란 기본시설(대공연장, 소공연장, 전시실, 야외공연장, 야외전시장)과 부대시설(피아노, 조명, 음향시설, 영상기, 냉·난방기) 등을 말한다. <u><신 설></u> 2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 <u>구미시문화예술회관</u> "이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" <u>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</u> "이란 공연시설, 체육시설, 교육시설, 기타시설 등을 말한다.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 제2조의2(명칭과 위치) ① <u>구미시문화예술회관</u> 은 <u>구미시 송정대로 89(송정동)</u> 에 둔다.

<신 설>

제3조(사용허가)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3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, 전시 및 행사

③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다음

②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은 구미시 인동가산로 392(구평동)에 둔다.

제2조의3(강동문화복지회관의 운영)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은 분관으로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운영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 ①구미시문화예술회관(이하 "예술회관"이라 한다)-- 구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--. -----
-----.

②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 시장-----

③-----
----- 따라 -----
-----.

-----.

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-----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1.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

2. · 3. (생략)

4.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횟수는 오전, 오후, 야간 각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1. ~ 7. (생략)

8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: 4일 이내

제9조(허가취소)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, 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1. ~ 5. (생략)

6.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(생략)

--- 아니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 -----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 시장-----

②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 시장-----

제9조(허가취소) ① 시장-----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 시장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관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람료) ① (생략)

②관람료는 관람권, 입장권(이하"관람권"이라 한다)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관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사용자의 설비) ①-----

----- 시장-----

-----.

②시장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-----

----- 시장-----

-----.

-----.

제11조(관람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시장-----

-----.

③ (생략)

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할의 범위안에서 관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⑤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예술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소각한다. 다만,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는 5년간 보관한다

⑥ · ⑦ (생략)

제14조(권리의 양도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시장-----.

⑤ -----

----- 시장-----

-----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권리의 양도금지) -----

-----.

제15조(입장의 제한) -----

--- 시장-----
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 시장-----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종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.

1.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
2. 시, 군, 구

② ~ ④ 생략

제101조(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, 그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03조(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.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~ ⑥ 생략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관 장	김 정 학
	담 당	이 상 록
	담 당 자	김 종 기 (480-4554)